

## 중재판정의 집행거부와 소극적 구제

- 싱가포르의 *PT First Media TBK v. Astro Nusantara International BV and others* [2013] SGCA 57 판결의 분석 -

Refusing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and Passive Remedy :  
Focused on *PT First Media TBK v. Astro Nusantara International BV  
and others* [2013] SGCA 57

서지민\*  
Ji-Min Sur

### 〈 목 차 〉

- I. 서 론
- II. 사안의 개요
- III. 사안의 검토
- IV.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

**주제어** : 중재판정의 취소,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소극적 구제, 적극적 구제, 중재판정 취소사유, 중재판정 집행거부사유, 중재판정의 효력

\*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 무역학부 조교수, [jmsur2020@pusan.ac.kr](mailto:jmsur2020@pusan.ac.kr)

## I. 서론

중재제도를 활성화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중재판정에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력한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중재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중재는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소송절차와 같이 엄격하고 공정한 규율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중재판정 자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특히 중재판정의 이익을 얻지 못한 일방의 입장에서 보면, 만일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 중재인 선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중재절차가 용인될 수 없을 만큼 부당한 경우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구제받는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중재판정의 이익을 얻지 못한 당사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중재판정의 이행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가 중재판정에서 승리한 당사자가 집행판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그 소송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집행을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중재판정을 적극적으로 실효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중재판정의 집행청구소송은 대개 중재판정에서 패한 당사자의 주소지나 재산소재지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중재판정취소 소송은 중재판정지에서 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중재판정에서 패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주로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국내중재의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sup>1)</sup> 이렇게 중재판정에서 패한 당사자의 관점에서 보면, 중재판정의 집행거부를 소극적 구제의 방법을 띠며, 중재판정의 취소소송은 적극적 구제의 형태를 띠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중재판정에서 패한 당사자가 그 구제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그 요건상의 제한은 없는 것인지 또는 대상이 되는 중재판정의 성격상의 제한은 없는 것인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즉, 양자 모두 대상이 되는 중재판정의 성질과 범위에 따라 구제방법상의 요건과 절차가 다르게 전개되므로 일률적으로 구제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이처럼 중재판정에 대한 구제방법에 관해 논란이 된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를 소개하고 분석해보고자 한다. 해당 사례는 2013년 싱가포르 항소법원에서 내려진 *PT First Media TBK v. Astro Nusantara International BV and others*<sup>2)</sup> 중재판정 집행결정의 취소판결(이하 '*PT First Media v. Astro* 사건'이라 한다)인데, 소극적 구제로서 중재판정의 집행거부와 적극적 구제로서 중재판정의 취소소송에 관한 논점이 제시된 사례로 유명하다.

1)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235~236면.

2) [2013] SGCA 57.

이 판결은 실제로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에 매우 우호적인 싱가포르 법원에서 내려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국제중재판정이 싱가포르에서 취소된 최초의 판결로 기록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도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 2013년 당시 중재실무계에서는 큰 주목을 받은 사례로도 유명하나, 국내에는 아직 본 사례가 제대로 소개되거나 검토된 선행연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sup>3)</sup> 이에 본 논문에서는 *PT First Media v. Astro* 사건의 사실관계, 중재판정, 중재판정의 집행, 중재판정의 취소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의 개요를 시작으로, 본 사건에서 의미하는 중재판정에 대한 구제의 의미, 범위, 요건 등을 분석하고 판결의 취지를 검토하여 우리 중재법제상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 II. 사안의 개요

### 1. 사실관계<sup>4)</sup>

#### (1) 당사자

본 사건은 인도네시아의 거대 복합기업 Lippo 그룹과 말레이시아의 방송 미디어 그룹인 Astro간의 합작사업(joint venture)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이다. 합작사업계약은 양그룹의 계열사들이 개별계약에 참가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사안의 당사자 관계를 획일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구체적인 당사자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한다. 사건의 원고측은 Astro 그룹이고 피고측은 Lippo 그룹이다.

[표 1] 본 사건의 당사자 관계

Astro Group (말레이시아)	X1~X5	X6의 계열사(본 건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
	X6	영국설립회사로서, PayTV 서비스를 운영하는 말레이시아설립 투자지주회사가 주요주주(본 건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 아님)
	X7, X8	X6의 계열사(본 건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 아님)
Lippo Group (인도네시아)	Y1	PT Ayunda Prima Mitra
	Y2	PT First Media TBK
	Y3	PT Direct Vision(양그룹의 조인트 벤처로서 합작사업계약에 의해 설립된 합병회사)

- 3)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부분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김선정, “중국에 있어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절 사유인 공서와 법의 지배”, 『중재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8, pp.23~50; 김영주, “ASEAN 국가들의 외국중재판정에 관한 승인 및 집행 - 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의 법제 및 관례를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5, pp.19~47 참조. 싱가포르의 중재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김상찬·김유정, “싱가포르 국제중재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4, pp.137~160 참조.
- 4) 본 사건의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에 관하여는 UNCITRAL의 CLOUT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http://www.uncitral.org/docs/clout/SGP/SGP\\_311013\\_FT\\_1.pdf](http://www.uncitral.org/docs/clout/SGP/SGP_311013_FT_1.pdf)> (2018. 9. 5. 검색) 참조.

## (2) 합작사업계약

2005년 3월 Astro 그룹과 Lippo 그룹은 인도네시아의 가정용 다채널 디지털 위성방송의 송신에 관한 합작사업계약(Joining Venture Agreement, 이하 JVA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서는 Astro 그룹의 X1, X2, X3, X4 및 Lippo 그룹의 Y1이 조인트벤처 Y3의 주주로서 참여하였다. X5는 본 JVA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Astro 그룹측의 당사자로서 참여하였고, Lippo 그룹에서는 Y2가 JVA의 이행보증 당사자가 되었다.

## (3) 주식인수 및 주주간 계약

2005년 3월 11일, Astro 그룹과 Lippo 그룹은 ‘주식인수 및 주주간 계약’(Subscription and Shareholders’ Agreement, 이하 ‘SSA’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SSA의 Astro 측 당사자는 X1~X5이었고, Lippo 측은 Y1, Y2, Y3이었다. Astro 측의 X6, X7, X8은 SSA의 당사자는 아니었으나, Y3이 영업을 개시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 서비스 및 자금을 제공해주기로 하였고 이러한 취지의 조항이 SSA에 삽입되어 있었다.

또한 SSA에는 거래종결의 전제조건으로서 각 당사자의 이행의무가 2006년 7월말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동시에 해당 조건 중에는 Astro 그룹과 Y3이 서비스 계약(Service Agreement, 이하 ‘본 건 서비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 (4) 합작사업의 진행중단

X6, X7, X8은 본 건 서비스 계약이 체결되고 동시에 합작사업이 개시된다는 기대하에, 2005년 12월 및 2006년 1월부터 Y3에게 SSA의 계약조항에 따른 설비, 서비스 및 자금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Y3은 2006년 2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Astro 그룹과 Y3간의 본 건 서비스 계약은 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Astro 그룹과 Lippo 그룹은 몇 차례의 회의를 통해 본 건 서비스 계약의 이행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해당 계약이행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2007년 8월에 이르러 각 당사자는 합작사업과 관련된 거래의 원만한 종결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거래관계 종료에 대한 다른 방안들에 대해 협상을 시작하였다. 다만 이 시점에서 X6, X7, X8은 Y3에 대해 설비, 서비스 및 자금 제공을 지속하고 있었다.

## (5) 분쟁의 발생

이와 같은 상황하에, X1과 X2는 Y3에 대해, X6, X7, X8이 Y3에 대한 설비, 서비스 및 자금 제공 의무를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에 Lippo 그룹은 X6, X7, X8이 SSA 체결전에 성립한 묵시적 합의에 근거해 해당 설비, 서비스 및 자금 제공 의무를 계

속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08년 8월 Astro 그룹은 Y3에게 당시까지 제공한 설비와 서비스의 대가 및 자금의 반환에 관한 청구서를 송부하였다. 그러나 Lippo 그룹은 그에 대한 대가 및 반환 요청을 거부하였다.

결국 Y1은 Y3의 경영 및 자금 유통에 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X6, X7, X8을 인도네시아 법원에 제소(이하 ‘본 건 인도네시아 소송절차’라 한다)하였다.

### (6) Astro 그룹의 중재신청

본 사건의 SSA에는 당사자간 분쟁발생시,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이하 ‘SIAC’이라 한다)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취지의 분쟁해결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sup>5)</sup>

Astro 그룹은 본 건 인도네시아 소송절차가 해당 중재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08년 10월 6일 SIAC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Astro 그룹이 중재신청서에 기재한 청구 이유는 대체로, ① X6, X7, X8을 중재당사자로 한다는 결정,<sup>6)</sup> ② 본 건 합작사업의 부존재 확인 및 X1 내지 X8의 본 건 설비, 서비스 및 자금 제공에 관한 지속의무의 부존재 확인, ③ Y1의 본 건 인도네시아 소송절차의 수행 금지 및 이 소송절차의 수행을 위한 Y2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금제공의 금지, ④ 본 건 인도네시아 소송절차에 관한 비용지급 및 장래 비용지급에 대한 보장, ⑤ 본 건 설비, 서비스 및 자금 제공의 배상금으로서 미화 약 2억 5천만 달러의 지급, ⑥ 미화 약 2억 5천만 달러의 배상금에 대한 이자 및 신청비용의 지급 등에 관한 것이었다.

나아가 Astro 그룹은 X6, X7, X8이 중재절차 참가에 동의하였음을 이유로, 2007년 SIAC 규칙 제24.1b조에 근거하여 추가당사자 신청(joinder application)을 제기하였다.

## 2. 중재판정

Astro 그룹이 제기한 중재신청에 대해, Lippo 그룹은 X6, X7, X8은 SSA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들에 대한 추가당사자 신청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중재판정부는 먼저 선결문제에 관하여, 2007년 SIAC규칙 제24.1조 b항은<sup>7)</sup> 중재판정부

- 
- 5) SSA의 중재조항상 중재지는 싱가포르였고, 중재절차에 적용될 준거법으로서의 중재규칙은 2007년 SIAC 중재규칙(SIAC Arbitration Rules, 2007)이었다.
  - 6) Astro 그룹이 이에 대한 판단을 요구한 것은 본 건 인도네시아 소송절차의 대상인 X6, X7, X8이 SSA의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 7) SIAC Rules (2017) §24.1.b: “In addition and not in derogation of the powers conferred by any applicable law of the arbitration, the Tribunal shall have the power to: … b. allow other parties to be joined in the arbitration with their express consent, and make a single final award determining all disputes among the parties to the arbitration; … ”

에게 다른 당사자들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 그들을 중재판정에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본 건에서는 X6, X7, X8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으므로 추가당사자로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본 건 합작사업계약상의 중재조항에 따라 당사자간의 중재합의의 성립은 유효하므로, X6, X7, X8을 상대로 한 Y1의 인도네시아 소송절차와 이 소송절차의 수행을 위한 Y2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금제공은 직소금지의 원칙상 금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Astro 그룹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해 Y2는 중재판정부가 Lippo 그룹과 X6, X7, X8간의 분쟁에 대한 중재판정의 권한 없음을 이유로 반론을 제기하였다. 다만 Y2는 이러한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결정에 대해서는 “UNCITRAL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이하 ‘모델법’이라 한다) 제16조 (3)항에 의거한 불복신청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표명하였다. 이후 중재판정부는 2009년 10월 3일부터 2010년 8월 3일까지 Astro 그룹이 제기한 4가지의 중재신청의 청구이유를 인정하고 이를 인용한 중재판정을 내렸다.

### 3. 중재판정 집행판결

중재판정이 내려진 이후, Astro 그룹은 전술한 각 중재판정의 싱가포르내 집행을 허가받기 위해 싱가포르 고등법원(High Court of Singapore)에 집행허가 결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2010년 8월 5일 및 같은 해 9월 3일에 걸쳐 해당 중재판정의 집행을 허가(이하 ‘본 건 중재판정 집행판결’이라 한다)하였다.<sup>8)</sup>

### 4. 집행판결의 취소소송

Y2는 본 건 중재판정부가 X6, X7, X8을 중재절차에 추가당사자로서 참가시킨 것은 2007년 SIAC 중재규칙 제24.1조 b항에 위반하고 있으므로, 중재판정부는 X6~X8과 Y2간의 분쟁에 대한 중재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Y2는 이와 같은 취지로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본 건 중재판정 집행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1) 싱가포르 고등법원의 판단

싱가포르 고등법원은<sup>9)</sup> 다음과 같은 이유로 Y2가 제기한 중재판정 집행판결 취소소송을

8) Originating Summons No 807 of 2010 (Summons No 6343 of 2013) & Originating Summons No 913 of 2010 (Summons No 6344 of 2013).

기각하였다.<sup>10)</sup>

첫째, 싱가포르 국내에서 이루어진 국제중재판정의 효력에 대하여는 싱가포르 국제중재법(International Arbitration Act) 제19B조에 의해 중국적이며 구속력(final and binding)을 갖는다. 그러나 해당 국제중재판정은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19B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모델법 제34조의 사유 또는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24조의 사유에 의해 취소가 가능하다.

한편 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를 규정한 모델법 제35조 및 제36조는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3조에 의해 싱가포르법상 그 적용이 배제되어 있으므로, Y2는 모델법 제35조 및 제36조에 근거하여 국제중재판정의 집행거부를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Y2가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델법 제34조 및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24조에 근거한 중재판정의 취소신청 뿐이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Y2는 취소신청과 관련하여 어떠한 신청도 제기한 바가 없고, 또한 모델법 제34조 (3)항이 정하는 3개월의 제척기간도 경과한 상황이다.

둘째,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중재권한과 관련된 관할권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모델법 제16조 (3)항에 근거해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해당 결정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판정부의 해당 결정은 중국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따라서 이후의 쟁점에 관한 심리에 대하여는 중재판정부가 중재권한을 갖게 되는 바, 당사자는 중재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집행단계에서 이를 주장하여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상으로는 이와 같은 소극적 구제(passive remedy)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델법 제16조만이 중재판정부의 중재권한 결정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셋째, 본 사안의 Y2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중재판정부의 중재권한이 없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Y2가 추가당사자의 신청여부를 비롯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판단할 실익이 없다.

## (2) 싱가포르 항소법원의 판단

싱가포르 항소법원(Court of Appeal) Y2의 항소청구를 인용하여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이로써 본 건 SIAC 국제중재판정은 중국적으로 취소되었다. 항소법원의 판시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9) 싱가포르는 1994년 초까지 최고법원으로서 영국 추밀원사법위원회(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에 대한 상소제도를 유지하였으나, 1994년 4월에 이를 폐지하고, 싱가포르 대법원(Supreme Court)을 설치하였다. 싱가포르 대법원의 구조는 2원적 구조로서, 고등법원(High Court)과 항소법원(Court of Appeal)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구조상으로는 고등법원은 하급심에서 불복한 민·형사사건을 다루는 2심 재판소이며,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최종심리를 담당하는 제3심 재판소 역할을 하고 있다(김영주, “2013년 SIAC 개정 중재규칙에 관한 검토”, 「국제상학」, 제29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14, p.18).

10) *Astro Nusantara International BV v PT Ayunda Prima Mitra* [2013] 1 SLR 636.

첫째,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19조는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일반규정이다. 문제는 국제중재법상 싱가포르 내에서 이루어진 국제중재판정, 즉 내국국제중재판정의 집행에 대해 당사자의 불복 권한을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관한 점이다. 이에 관하여는 싱가포르 의회가 모델법을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19 조상에 당사자의 불복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sup>11)</sup>

둘째, 위와 같이 해석하여 국제중재법 제19조상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면, 그 내용상 영국중재법이 규율하는 내용과는 다르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 이점에서는 모델법과 외국중재판정에 관한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이 싱가포르 중재법 체제상 도입된 과정에 비추어 해당 규정의 해석을 모델법의 취지와 도모할 필요가 있다.

모델법 제35조 및 제36조의 적용제외를 규정한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3조 (1)항을 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와 같은 기본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해당 규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과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이 저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모델법 제16조에서 정한 기간제한 규정은 구제방법의 선택의 예외를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모델법 제16조 자체만으로 기간제한이라는 1회성 구제(one-shot remedy)를 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19조에 근거해 Y2는 모델법 제36조 (1)항에 해당되는 거부사유를 이유로 중재판정의 집행허가판결의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sup>12)</sup>

셋째, 2007년 SIAC 중재규칙 제24.1조 b항의 실질적으로 해석하면, 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중재절차에 참가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본 건에서 중재판정부가 SSA의 당사자가 아닌 X6, X7, X8을 중재절차에 추가당사자로서 참가시킨 것은 Y2와 X6·X7·X8간에 명시적인 중재합의 존재하지 않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본 건의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Y2는 추가당사자에 대한 불복신청(joinder objection)의 권리를 포기한 바가 없고, 지속적으로 이를 주장하고 있었으며, 추후 금반언에 위반하는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sup>13)</sup>

따라서 Y2는 본 사안에서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19조에 근거해 중재판정의 집행에 불복할 수 있으며, 이로써 X6·X7·X8에 대한 중재판정의 집행허가 결정에 취소사유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본 사안에서 X1~X5는 SSA의 당사자이고 Y2는 이들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다. 그리고 복수 당사자간의 중재합의와 관련하여, 만약 일부 당사자간의 중재합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다른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중재합의의 유효성에는

11) *PT First Media TBK v. Astro Nusantara International BV and others* [2013] SGCA 57, paras.34~47.

12) *Ibid.* paras.54~144.

13) *Ibid.* paras.145~224.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본 건의 중재판정 가운데, Y1 및 Y2는 X1 및 X2에 대해 연대하여, 미화 608,176.54 달러, 22,500 영국파운드(GBP) 및 65,000 싱가포르 달러를 지급하도록 판단한 중재판정의 집행은 인정된다.

### Ⅲ. 사안의 검토

#### 1. 쟁점

본 사건에서는 ① 싱가포르 국제중재법(International Arbitration Act)<sup>14)</sup> 국내중재판정에 대해 집행거부를 주장할 수 있는지, 만약 주장할 수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관한 소극적 구제(passive remedy)의 존재여부 문제, ② 중재권한에 관한 선결로서 중간판정 단계에서 불복신청을 행하지 않고, UNCITRAL 모델법 제16조 (3)의 기간도과 나아가 중국판정의 취소신청기간도 도과한 이후, 집행단계에서 처음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가 하는 구제방법의 선택(choice of remedy) 문제, ③ 추가당사자 신청의 가부 문제가 주요한 쟁점이 되었다.<sup>15)</sup> 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검토해보도록 한다.

##### (1) 소극적 구제의 존부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UNCITRAL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이하 ‘모델법’이라 한다)은 모델법 제8장의 규정을<sup>16)</sup> 제외하고 싱가포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7)</sup> 따라서 모델법 제34조에 근거해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 중재판정의 취소신청은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상 인정되고 있다.

한편 모델법 제36조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여기서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3조 (1)항은 모델법 제8장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14) Cap. 143A, 2002 Rev. Ed.

15) Dylan McKimmie & Meriel Steadman, “Singapore Court of Appeal: New Ruling on Active and Passive Remedies for Challenging Jurisdiction,” *International Arbitration Report 2014, Issue 2*, Norton Rose Fulbright, 2014, p.2.

16) 모델법 제8장은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제35조 및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를 규정한 제36조로 구성되어 있다.

17)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3조 (모델법의 법적 효력): “(1) 이 법률에 따라, 모델법은 제8장의 규정을 제외하고 싱가포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2) 모델법에서 ‘국가’는 싱가포르 및 그 외의 국가를 의미한다. ‘이 국가’는 싱가포르를 의미한다.”

또한 국제중재법은 국내의 국제중재판정에 대한 집행단계상의 거부사유 주장의 효력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상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는 소극적인 구제가 인정되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상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Lippo 그룹은 바로 이 국제중재법 제19조를 이용하여, 중재판정의 집행허가를 거부하는 사유에는 모델법 제36조 (1)항이 열거하고 있는 거부사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즉, Lippo 그룹 주장의 전제로는 본 사건에서는 당사자간의 중재합의가 없었으며, 이는 모델법 제36조 (1)항의 거부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결국 본 사건에서는 싱가포르 법원이 국제중재법 제19조를 근거로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인지 또한 만약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X6, X7, X8이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이점이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 (2) 구제방법의 선택

모델법 제16조 (3)항은 “중재판정부가 선결문제로서 자신의 관할권이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당해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제6조에 명시된 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항을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을 인정한다. 또한 불복신청은 그 결정의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기간제한을 두고 있다.

본 사안에서 Y2는 모델법 제16조 (3)항에 근거한 불복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를 표명한 바 있고, 실제로도 그 기간 내에 법원에 이러한 불복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모델법 제34조 (3)항은 중국적 중재판정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취소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Y2는 이 규정에 근거한 취소신청도 제기한 바가 없다. 그러므로 Y2가 만약 국제중재법 제19조를 원용하여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델법 제16조 (3)항이나 모델법 제34조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로서 중재판정의 집행에 대한 불복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가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상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신청방법으로 중재판정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적극적인 구제(active remedy)만이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재판정의 집행단계에서 거부사유를 주장하는 소극적인 구제(passive remedy)도 허용되는 것이냐가 문제가 된다. 즉, 중재판정에 대한 일방의 동일한 불복신청의 방법을 중재판정의 취소라는 형태를 취할 것인지 또는 중재판정의 집행단계에서 이를 구할 것인지, 이른바 구제방법의 선택(choice of remedy) 여부가 사안의 쟁점이 되고 있다.

### (3) 추가당사자의 신청 여부

앞서 언급한 쟁점사항들이 모두 인정되고, 모델법 제36조 (1)항의 거부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국제중재법 제19조에 근거한 중재판정의 집행허가결정이 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결국 본 사안에 있어 그러한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본 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X6·X7·X8은 어디까지나 본 건 SSA의 당사자는 아니며 따라서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중재합의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모델법 제36조 (1)항 (a)(i)에서 언급된 중재합의의 부존재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당사자간의 중재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선택한 2007년 SIAC 중재규칙 제 24.1조 b항은<sup>18)</sup> 중재판정부가 추가당사자들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 그들을 중재절차에 추가시킬 수 있다는 명시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중재판정부의 추가당사자 신청에 대한 결정 권한의 유효성 여부가 사안에서 문제가 된다. 즉, SIAC 규칙 제 24.1조 b항에 근거해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중재절차에 추가당사자로 하여 참가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또 다른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 2.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상 중재판정의 집행

### (1) 개관

싱가포르는 커먼로 국가로서 영국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중재법제와 관련해서도 싱가포르는 1950년의 영국 중재법(English Arbitration Act of 1950, 이하 ‘1950년 영국 중재법’이라 한다)을 기본으로 하여, 1953년에 싱가포르 중재법(Arbitration Act, 이하 ‘1953년 중재법’이라 한다)을<sup>19)</sup> 제정한 바 있다.

현재 싱가포르 법제상 중재제도를 규율하는 기본 법규로는, 중재법(Arbitration Act)과 국제중재법(International Arbitration Act)이 있다.<sup>20)</sup> 양법의 차이점은 그 적용범위에 있는데, 먼저 중재법은 싱가포르 국내의 중재사건을 규율하는 법률이며, 국제중재법은 말 그대로 국제중재사건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원래 싱가포르는 중재법 제정시,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를 통합하여 다루고 있었다.<sup>21)</sup> 그러나 UNCITRAL 모델법의 전 세계적인 확대 추세

18) 2007년 SIAC 중재규칙 제24.1조 b항은 2013년 개정되어, 최근 개정된 2017년 SIAC 중재규칙상 중재인의 기타권한은 제27조에서 규정되어 있고, 추가당사자에 관한 규정은 제7조에서 규정되어 있다.

19) Act 14 of 1953.

20) 싱가포르가 국내중재법과 국제중재법의 이원적 체제를 마련하게 된 것은, 법원의 개입을 가급적 축소하고자 하는 UNCITRAL 모델법의 태도 및 중재실무의 국제적 조류상 국제중재를 개별적인 법률 체제로 다루어 이에 부합하려는 정책적 이유에 기인한 것이다. 국내중재의 경우에는 간혹 법원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2001년 싱가포르 중재법 제정시에도 이러한 점이 논의가 되었었다. 결국 국내중재법과 국제중재법이 규정상의 조화를 이루면서, 동시에 법원의 감독이나 집행 부분과 같은 점들을 구별할 수 있는 이원적 체제로 가는 방향에서 그 입법논의가 이루어졌다(김영주, 전제논문(각주9), p.10).

에 따른 국제화에 부합하고자, 1994년에 이를 수용한 국제중재법을 제정하였고, 2001년에는 국내중재만을 규율하는 중재법을 성립시켰다. 즉, 국제중재법은 UNCITRAL 모델법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관련된 개별 특칙을 구체화시켜 제정한 것이다.<sup>22)</sup>

싱가포르의 경우, 1986년 11월 19일 뉴욕협약을 비준하였는데, 구체적인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절차에 관하여는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19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sup>23)</sup> 한편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27조 제1항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중재판정을 “싱가포르 이외의 뉴욕협약 체결국을 중재지로 하는 중재판정”이라고 정의한다. 외국중재판정은 싱가포르 고등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판결 또는 법원의 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절차가 가능한데(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19조), 국내중재판정의 경우에도 그 집행을 위해서는 싱가포르 고등법원에의 신청 및 허가가 필요하다(싱가포르 중재법 제46조 (1)항).<sup>24)</sup>

싱가포르의 경우 ‘상호보증집행법’(Reciprocal Enforcement of Commonwealth Judgments Act, 1921)이 있다. 이는 영연방국가 및 기타 이 법에서 규정된 국가의 중재판정은 해당 외국중재판정이 내려진 외국관할법원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에 준하여 집행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sup>25)</sup> 따라서 영연방국가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이라면 싱가포르 상호보증집행법에 따라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이 가능하다. 또한 싱가포르도 중재법상 커먼로 원칙들이 인정되기는 하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 절차의 경우 이것이 원용될 여지는 그리 많지 않다.

본 사건은 싱가포르 국내에서 이루어진 국제중재판정으로, 여기서의 국제중재판정은 싱가포르 이외의 외국에서 내려진 외국중재판정과 성격이 다른 내국중재판정이다. 이점에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문제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과는 다른 문제가 제기되었다.

## (2)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19조의 성격

우선 사안에서는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19조의 범위와 성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19조의 해석상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집행에 불복신청을 구하는

21) Leng Sun Chan & Sheik Umar, “Singapore”, in *Asia Arbitration Guide*, 5th Rev. Ed.(Andreas Respondek ed.), Respondek & Fan, 2013, p.253.

22) 영국은 1996년 중재법 개정시, UNCITRAL 모델법을 채용하지 않았다.

23) Christopher Lau,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of Singapore,” in *Practitioner’s Handbook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Frank-Bernd Weiga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745.

24) 구체적인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싱가포르 법원규칙(Rules of Court Order) 69A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선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은 신청인이, ① 중재합의서, 정식으로 인증된 중재판정의 원본 또는 정식으로 인증된 등본, ② 신청인과 중재판정의 집행대상자의 성명,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회사의 주소, ③ 중재판정이 준수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 등이 기재된 서류를 포함하여 소환장(summons)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해당 중재판정이 내려진 시점에서 6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싱가포르시효법(Limitation Act) 제6조 제1항 (c)).

25) Christopher Lau, *op. cit.*, p.745.

권한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에 관한 것이었다. 먼저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19조를 보면, “중재합의에 의한 중재판정은 고등법원 또는 해당 재판관의 허가를 얻어 법원의 판결 또는 명령과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고, 허가를 얻은 경우 중재판정의 내용대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19조는 1985년의 싱가포르 중재법(Arbitration Act, 이하 ‘1985년 중재법’이라 한다)<sup>26)</sup> 제20조를 바탕으로 하여 도입한 규정이다. 여기서 싱가포르 중재법 제20조는 1953년의 싱가포르 중재법 제20조를 답습하고 있다. 그리고 1953년 중재법 제20조는 1950년의 영국중재법 제26조를 기본으로 삼고 있다. 1950년 영국중재법은 동법 제23조에 중재판정의 취소신청 이른바 적극적 구제(active remedy)를 규정하고, 동법 제26조에 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 이른바 소극적 구제(passive remedy)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싱가포르 법제에서는 중재당사자의 소극적 구제가 인정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27)</sup>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중재법의 제정에 의해 싱가포르 내에서 이루어진 국제중재판정(내국국제중재판정)의 집행에 대해 당사자의 불복 권한이 폐지되었는지 아닌지에 관한 점이다.

싱가포르 의회가 UNCITRAL 모델법을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19조상에 당사자의 불복 권한을 폐지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본 사건 항소법원의 견해인데, 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의 제정연혁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논의가 이루어지거나 논의된 흔적이 없다는 점이다.

둘째, 중재법은 국내중재를 규율하는 것으로 중재판정의 취소와 같은 당사자의 불복권한을 그대로 두고 있음에 반하여, 국제중재법은 국제중재에 대해 그러한 소극적 구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연혁적으로 동일한 규정에서 비롯된 것 당사자의 불복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2개의 법규체제가 병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셋째, 가장 중요한 문제로는 중재판정의 취소 또는 집행거부에 관련된 당사자의 구제방법의 선택(choice of remedy)은 영국중재법뿐만 아니라 모델법에서도 기본 원칙이라는 점이다.

Y2(Lippo 그룹)는 국제중재법 제19조의 성격상 중재판정의 집행허가를 거부하는 사유, 즉 모델법 제36조 (1)항이 열거하고 있는 거부사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sup>28)</sup> 본 사건의 항소심은 위와 같은 취지로 Y2의 주장을 반영하여,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상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는 소극적인 구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26) Cap. 10, 1985 Rev. Ed.

27) 이에 관하여는 Singapore Parliamentary Debates, “Official Report (5 March 1980),” vol. 39, Singapore Parliament, 1980, p.605 이하 참조.

28) Y2가 주장하는 바는, Y2와 X6·X7·X8간의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것은 모델법상의 집행거부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3.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상 구제방법의 선택 가능성

#### (1) 중재판정의 취소신청

싱가포르의 중재법 체계상 중재판정의 취소는 싱가포르 중재법과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양자 모두 거의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 싱가포르 중재법은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로서, ① 중재합의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② 싱가포르 법령상 중재합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③ 중재당사자가 중재절차와 관련한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④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⑤ 중재판정부의 구성 및 중재절차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법령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 ⑥ 사기 또는 독직에 의해 중재판정이 이루어진 경우, ⑦ 중재판정이 당사자의 권리침해를 통하여 내려짐으로써 자연적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게 된 경우를 열거한다(싱가포르 중재법 제48조 (1)항). 법원은 이러한 사유의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싱가포르 중재법상 법원의 직권에 의한 취소사유로 ⑧ 분쟁의 실체가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⑨ 중재판정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위반하는 경우를 두고 있다.

둘째,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상 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위의 싱가포르 중재법과 거의 동일한 취소사유를 열거한다. 다만 규정의 체계방식이 중재법과는 약간 다른데, 일단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은 모델법을 직접적용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취소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모델법 제34조 (2)항의 취소사유를 직접 적용하도록 한다. 이후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24조에서 추가적인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상의 취소사유로는 취소신청의 당사자가 증명을 요하는 사유로, ①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무능력자이거나, 또는 그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준거법으로서 지정한 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싱가포르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 ② 취소신청을 한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변론을 할 수가 없는 경우, ③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에서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을 다루었거나, 또는 중재합의의 범위를 넘는 사항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④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이다(모델법 제34조 (2)(a)).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는 ⑤ 분쟁의 본안이 싱가포르 법령상 중재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⑥ 중재판정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위반하는 경우이다(모델법 제34조 (2)(b)).

한편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은 모델법 제3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은 모델법

제34조에 규정된 사유에 추가하여, ① 중재판정의 과정이 사기 또는 독직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영향을 받은 경우, ② 중재판정이 당사자의 권리침해를 통해 내려짐으로서 자연적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추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24조).

싱가포르 중재법 및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모두 중재판정의 취소신청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을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싱가포르 중재법 제48조 (1)항·모델법 제34조 (3)항).

본 사안에서 Y2는 본 건 중재판정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다. 이미 Y2는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상 중재판정 취소신청의 기간제한인 3개월을 도과하고 있다. 즉, 중재판정의 취소소송이 아닌 본 건 중재판정의 집행허가 결정이 내려진 후를 기다려, 이 집행판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이점에서 구제방법의 선택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가 된 것이다.

## (2) 중재판정의 집행거부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은 제19조에서 ‘중재판정의 집행’을 규정하고, 제29조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규정한다. 제29조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19조는 내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규정임을 추론할 수 있다. 여기서 내국중재판정은 싱가포르 내에서 이루어진 국제중재판정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순수한 국내중재판정의 경우에는 싱가포르 중재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상 내국중재판정에 대한 집행을 다루는 제19조는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다루는 제29조 이하의 규정과는 달리 집행거부사유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먼저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를 보면, 모델법 제36조상의 집행거부사유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중재판정의 취소사유와 비교했을 때도 큰 차이가 없이 거의 동일하다.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다음의 사유를 증명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중재합의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② 싱가포르 법령상 중재합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③ 중재당사자가 중재절차와 관련한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④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⑤ 중재판정부의 구성 및 중재절차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법령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 ⑥ 중재판정이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을 발생하지 않았거나 또는 중재판정이 이루어진 국가의 법원에 의하여 중재판정이 취소된 경우이다(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31조 (2)항). 또한 동법 제31조 (4)항에 따르면, 법원은 ① 외국중재판정이 싱가포르 법률상 중재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② 싱가포르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sup>29)</sup>

본 사안의 Y2는 본 건 중재판정이 SIAC 중재법원에서 내려진 내국중재판정이므로 외국중재판정에 관한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31조의 거부사유를 원용할 수 없었다. 결국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19조에 모델법 제36조 (1)항에서 인정되는 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가 인정된다는 주장 하에 집행판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즉, 중재판정의 취소가 아닌 집행판결의 취소를 제기하고 소극적 구제방법으로서 집행거부사유의 존재를 주장한 것이다. 이점에서 보면, 중재판정의 취소와 집행거부라는 두 가지의 구제방법 중 Y2는 의도적으로 집행거부방법이라는 점을 선택하여<sup>30)</sup> 불복신청을 제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방법이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상 인정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즉,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상 중재판정에 대한 일방의 동일한 불복신청의 방법을 중재판정의 취소라는 형태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중재판정의 집행단계에서 이를 구할 것인지, 이른바 구제방법의 선택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모델법의 규정 체계를 보면, 제7장은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Recourse against Award)라는 표제를 붙인 후, 제8장에서는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wards)라고 표제를 붙인 문언상 적극적 구제와 소극적 구제를 구별하고 있다고 보여진다.<sup>31)</sup> 모델법 제정과 관련된 워킹그룹의 보고자료를 보면, 모델법 제36조 (1)(a)(i), 제36조 (1)(a)(v) 및 제36조 (2)(b)에 대해 중재판정의 취소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에 대한 주장을 제한할 것인지 아닌지가 논의된 바 있다. 결론적으로는 모델법상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취소 및 중재판정의 집행에 대한 불복신청이라는 2중적 구제수단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결정되었다.<sup>32)</sup>

본 건에서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의 입장을 파기하고, 당사자가 구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모델법 제35조 및 제36조의 적용제외를 규정한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3조 (1)항을 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와 같은 기본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3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델법 제35조 및 제36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과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이 저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한다.<sup>33)</sup> 또한 모델법 제16조에서 정한 기간제한 규정은 구제방법의 선택의 예외를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모델법 제16조 자체만으로 기간제한이라는 ‘1

29) 국내중재판정에 관하여는 싱가포르중재법 제48조에서 동일한 집행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30) Y2는 모델법 제16조 (3)항에 근거한 불복신청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표명하였고, 실제로 3개월이라는 모델법상 불복신청의 제한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31) UNCITRAL, “Analytical Compilation of Comments by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on the Draft Text of a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CN.9/263, UNCITRAL, 19 March 1985, p.47.

32) UNCITRAL Working Group,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Work of its Seventh Session,” A/CN.9/246, UNCITRAL, 17 February 1984, paras.153~154.

33) Ramesh Selvaraj & Tan Kai Liang,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Singapore,”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 Handbook* (Stephan Balthasar ed.), Beck/Hart, 2016, p.567.

회성 구제'(one-shot remedy)를 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sup>34)</sup>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상 구제방법의 선택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 모델법의 경우에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의 경우에도 이를 달리 해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본 사안의 항소법원은 중재당사자의 구제방법의 선택을 인정함으로써 중재지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뉴욕협약과의 해석상 조화를 맞추는 것이 모델법의 기본 취지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델법 제36조 (1)항에서 인정되는 집행거부사유가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19조상의 규정에서도 같이 인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3. 사안의 시사점

지금까지 싱가포르 법원은 국내중재판정이든 외국중재판정이든 가급적 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있다. 가급적 중재판정의 취지를 인정하여 중재제도의 원활한 보급을 장려하고자 하는 정책적 기조도 있고, 특히 대다수의 판례들은 중재판정의 집행거부를 판단함에 있어 거부사유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편이다.<sup>35)</sup> 실제로도 현재까지 싱가포르에서 공서양속이나 중재합의의 무효를 이유로 중재판정, 특히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이 거부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 *PT First Media v. Astro* 사건에 의해 중재판정에 대한 지금까지의 싱가포르 법원의 우호적 태도에 상당한 변경이 가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항소법원의 법리가 전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나, 이미 중재판정의 집행이 허가된 판결을 취소하였다는 점에서는 실무적으로 중재판정의 집행적 효력을 싱가포르 법원이 무조건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 변화가 큰 파장이 된 것도 사실이다.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을 취소한다는 것은 SIAC 중재법원의 중재판정 자체에 취소 원인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향후 싱가포르 법원에서 중재판정의 집행거부와 관련한 법적 예측가능성은 어느 정도 감소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PT First Media v. Astro* 사건이 실무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이하에서는 우리법상의 참고를 포함하여, 본 사건에 관한 몇 가지 시사점을 검토해 본다.

첫째, 본 건 항소법원의 판결에 의해,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상 당사자는 선결문제와 관련된 중재판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① 중재판정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적극적 구제

34) *PT First Media TBK v. Astro Nusantara International BV and others* [2013] SGCA 57, para.105.

35) *PT Garuda Indonesia v. Birgen Air* [2002] SGCA 12; *Mitsui Engineering and Shipping Co Ltd v. Easom Graham Rush and Another* [2004] 2 SLR 14; *Aloe Vera of America v. Asianic Food & Another* [2006] SGHC 78; *AJT v. AJU* [2011] SGCA 41.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3조 (1)항 및 모델법 제16조), ② 소극적 구제로서 집행단계에서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는 소극적 구제(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19조 및 모델법 제36조)를 행사할 수 있음이 명확해졌다.

실무상으로는 선결문제와 관련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중간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중재판정의 취소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또한 중재판정부의 심증악화를 피하기 위해 중재판정부가 내린 중간판정의 당부 자체를 다투는 것은 의외로 적은 편이라고 한다.<sup>36)</sup> 본 사건 항소법원의 법리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19조상으로는 모델법 제36조 (1)에 의해 어떠한 이유도 집행거부사유로 원용하여 주장할 수 있으므로, 향후 그 적용범위가 선결문제에 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건과 같이 싱가포르 내의 내국국제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이 있었고, 이것이 적절하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는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사건이 관계된 제3국에서도 해당 중재판정의 유효성을 집행단계에서 다투는 것은 어렵게 된다. 바로 이 때문에 만약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이 싱가포르 이외의 국가에 많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의 취소신청을 하지 않고, 각국의 중재판정 집행단계에서 이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판결은 중재판정의 취소제기라는 적극적 구제와 집행거부라는 소극적 구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중재판정의 실효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한 사법적 취지가 반영된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본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중재판정에 대한 구제방법의 선택이 가능해지므로, 당사자는 보다 유리한 중재이익을 얻기 위해, 모델법 제16조 또는 모델법 제34조의 기간제한이 경과한 경우라도 싱가포르 법원에 집행단계에서 불복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모델법이 정한 기간제한의 실익이 무색해지고, 또 그럼에도 불복신청이 상당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남용하는 행위도 없다고 볼 수는 없고, 향후 중재절차의 신뢰성이 저해된다는 문제도 없는 것은 아니다.

둘째,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15조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모델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또한 제15조에 의하면, 싱가포르 중재법 제10장 또는 폐지된 1985년 중재법을 중재에 적용할 수 있다. 당사자가 만약 이러한 방식으로 중재에 적용될 준거법을 합의한 경우에는 본 건 항소법원은 싱가포르 중재법에 의해서도 소극적 구제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싱가포르 중재법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는 구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국내중재판정은 그 집행의 범위가 국제중재판정과 다르므로, 앞서 언급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으나, 구제방법 선택에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싱가포르 국내법 규정과의 저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우리나라 중재법의 경우에도 싱가포르 국제중재법과 같이 모델법의 취지와 입장

36) 이에 관하여는 Joseph Chu, Amanda Lees & Melissa Chim, "Award Debtors beware Inaction - Astro Award Enforced against Lippo in Hong Kong," *Simmons & Simmons Elexica*, 2015. 4. 14 참조.

을 대폭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다만 실질적인 입법의 형태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고, 법규 적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해석적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우리 중재법상으로도 중재판정의 취소규정과 뉴욕협약에 따른 집행거부규정이 모두 마련되어 있으므로, 중재판정에 대한 적극적 구제와 소극적 구제가 인정되는 데이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구제방법의 선택이라는 점이 우리법상에서는 적극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다. 우리법상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있음에도 취소기간을 경과하여 취소신청을 행하지 않고(우리나라 중재법 제36조 제3항),<sup>37)</sup> 본 사건과 같이 구제방법의 의도적인 선택을 위해 집행단계에 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신의칙상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즉, 본 사건의 취지와는 다른 결과가 유도될 가능성이 있다.

#### IV. 결 론

이상 본 논문에서는 2013년 싱가포르 항소법원의 *PT First Media v. Astro* 판결을 살펴 보았다. 본 판결은 중재합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중재판정부가 추가당사자로 인정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가 중재판정 및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이 내려진 후, 해당 집행판결의 취소를 구한 사례이다. 고등법원에서는 취소청구가 배척되었으나, 항소법원에서는 취소청구가 인정되어 해당 집행판결은 취소되었다. 항소법원은 중재판정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적극적 구제로서 중재판정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극적 구제로서 이에 대한 집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구제방법의 선택이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상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점에서 본 판결은 상당한 논란이 된 사례인데,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신청의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중재판정의 선결문제를 이유로 집행거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당사자는 그와 관련된 구제방법의 선택권이 있음을 명시하였기 때문이다.

실무계에서는 본 사건으로 인해 내국중재판정이든 외국중재판정이든 법원의 개입을 최소한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싱가포르 판례법상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평가도 있고, 당사자의 구제권 선택의 남용이라는 문제를 야기 시켰다는 비판도 있다. 오히려 본 판결로 인해 중재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보다 강화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판결의 쟁점을 분석하고 개별적인 견해 및 사안의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다. 본 논문은 전체적으로는 항소법원의 판결 법리를 지지하나 몇 가지 점에 있어서는 다소 명확하지 않은 점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포함하여, 결론으로서 다음과

37) 우리 중재법상으로는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청구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정본 또는 정정·해석 또는 추가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같은 본 판결의 몇 가지 문제들을 지적해보고자 한다.

첫째, 본 사건 항소법원의 법리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19조상으로는 모델법 제36조 (1)에 의해 어떠한 이유도 집행거부사유로 원용하여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즉, 향후 그 적용범위가 선결문제에 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재판정에 대한 구제방법의 선택이 가능해지므로, 당사자는 보다 유리한 중재이익을 얻기 위해, 모델법 제16조 또는 모델법 제34조의 기간제한이 경과한 경우라도 싱가포르 법원에 집행단계에서 불복신청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되면 모델법이 정한 기간제한의 법적 실익이 무색해지고, 구제권 선택의 남용되어 중재절차의 신뢰성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둘째,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15조에 따르면, 당사자 합의에 의해 모델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싱가포르 중재법 제10장 또는 폐지된 1985년 중재법을 중재에 적용할 수 있다. 본 건 항소법원에 따르면, 싱가포르 중재법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는 구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바, 구제방법의 선택에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싱가포르 국내법 규정과의 저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우리나라 중재법의 경우에도 중재판정에 대한 적극적 구제와 소극적 구제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구제방법의 선택이라는 점이 우리법상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겠냐 하는 점이다. 우리법상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있음에도 취소기간을 경과하여 취소신청을 행하지 않고, 본 사건과 같이 구제방법의 의도적인 선택을 위해 집행단계에 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신의칙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본 판결에서는 일반 사법상의 신의칙 위반과의 저촉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 않으나,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유사한 사건에서 신의칙에 의한 항변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김상찬·김유정, “싱가포르 국제중재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4.
- 김선정, “중국에 있어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절 사유인 공서와 법의 지배”, 「중재연구」, 제18권 제3호, 2008.
- 김영주, “ASEAN 국가들의 외국중재판정에 관한 승인 및 집행 - 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의 법제 및 관례를 중심으로 - ”, 「중재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5.
- 김영주, “2013년 SIAC 개정 중재규칙에 관한 검토”, 「국제상학」, 제29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14.
-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 Balthasar, Stephan, e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 Handbook*, Beck/Hart, 2016.
- Chu, Joseph, Lees, Amanda and Chim, Melissa, “Award Debtors beware Inaction - Astro Award Enforced against Lippo in Hong Kong,” *Simmons & Simmons Elexica*, 2015. 4. 14.
- McKimmie, Dylan and Steadman, Meriel, “Singapore Court of Appeal: New Ruling on Active and Passive Remedies for Challenging Jurisdiction,” *International Arbitration Report 2014, Issue 2*, Norton Rose Fulbright, 2014.
- Respondek, Andreas, ed., *Asia Arbitration Guide*, 5th Rev. Ed., Respondek & Fan, 2017.
- Sharp, Iain, Ng, Henry and Ahn, Yumi, “PT First Media v Astro Nusantara : A Cautionary Tale on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and Joinder of Third parties,” *A Broader Perspective Bulletin 2 December 2013*, Bryan Cave LLP, 2013.

## ABSTRACT

Refusing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and Passive Remedy :  
Focused on *PT First Media TBK v. Astro Nusantara International BV  
and others* [2013] SGCA 57

Ji-Min Sur

On October 31, 2013, the Singapore Court of Appeals handed down a landmark decision in the case of *PT First Media TBK v Astro Nusantara International and Others* [2013] SGCA 57. The case arose out of an arbitration in Singapore involving the Malaysian conglomerate *Astro* and the Indonesian conglomerate *Lippo*, which culminated in a USD 250 million award in favor of *Astro*. The final award was given to three *Astro* subsidiaries who were not parties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but who were joined in the arbitration pursuant to an application by *Astro*.

*Lippo* then applied to the Singapore High Court to set aside the enforcement orders. The Court of Appeals, however, reversed the High Court's decision, and found that *Astro* was only entitled to enforce the awards. Also, the Court of Appeals undertook a detailed analysis of the use of active and passive remedies to defeat an arbitral award at the seat and the place of enforcement, respectively. It also touches on the innovation of forced joinders of third parties in arbitrations, which have garnered significant interest in the arbitration community. This decision is therefore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ractic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including in relation to how awards can be enforced or defeated, as the case may be.

**Key Words** :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recourse against arbitral awards, passive remedy, active remedy, grounds for refusing enforcement